

인 천 지 방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노3654 폭행, 모욕
피 고 인 방병순 (000000-00000000), 000
주거 00 000 000로 00, 000동 0000호(000, 00000000000)
등록기준지 00 000 000 00-00
항 소 인 검사
검 사 허00(기소), 황00(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00(국선)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1고정649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0. 7.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표현 방법, 범행 장소와 주변인들과의 관계, 이로 인하여 피해

자가 느낄 수 있는 모욕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한 말은 충분히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는바,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서 요구되는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을 모두 결여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000000 00지역본부 0000부 과장이고, 피해자 조00(00세)은 같은 회사 0000부 직원으로 직장동료 사이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1. 10. 15:00경 00 00구 00000000길 00 000000 00지역본부 0000관리소 제어실에서 피해자가 작업복 바지를 입지 않은 것을 지적하여 피해자가 작업복 바지로 갈아입고 왔으나 복장불량이라고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한 것에 피해자가 나갈 이유가 없다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이새끼가. 재미있네 이놈. 헐리우드 쇼하네."라며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끌어당기며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피해자가 회사의 작업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퇴소지시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자 피고인이 그와 말다툼을 하는 도중에 감정이 격해져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에 불과하고, 그 발언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2)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어실에서 내보내려고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끌어당기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것은 그 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바닥에 미끄러졌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회사의 작업 안전수칙을 위반한 피해자에게 퇴소 지시를 하는 등 현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고 행동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 신체에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피해자의 안전수칙 위반의 정도, 피해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위험성, 피고인의 감독업무 및 그로 인한 제재조치의 정당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적어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보는 것이 타당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00 _____

 판사 봉00 _____

 판사 김00 _____